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3월 25일, 서미화의원 · 용혜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3.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7.) 상정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02.)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미화의원 · 용혜인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을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

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사용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